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대폭 확대 예고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직업성 암에 대장암과 위암, 유방암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또한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원인물질은 현행 9종에서 23종으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15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개최된 정책 토론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직업성 암의 유해요인은 현재 벤젠, 석면 등 9종에서 엑스선·감마선, 니켈 화합물 등 14종이 추가됐다. 또 난소암과 위암, 대장암, 유방암 등 12종의 암은 직업성 암 목록에 새롭게 추가됐다. 현행법에는 피부암과 후두암 등 9종만을 직업성 암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개선안은 호흡기계 질병을 유발하는 원인물질도 현행 19종에서 14종을 추가해 총 33종으로 인정 범위를 대폭 늘렸다. 특히 '분진작업에 노출돼 발생하는 만성폐쇄성폐질환'도 명문화해 근로자가 진폐에 해당하지 않아도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신질환 중 발병의 연관성이 확인되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도 산재 인정기준에 새롭게 포함했다.

이밖에 개선안은 만성과로의 인정 기준에 주당 평균 60 시간이란 객관적인 기준도 제시했다.

기존에는 '발병 전 3개월간 일상적인 업무에 비해 과도한 업무'로 명시했던 것을 '업무시간이 12주간 주당 평균 60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로 구체화한 것이다. 이는 업무와 만성과로의 발병 사이에 관련성이 강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근골격계 질병도 나이에 따른 자연경과적인 변화가 더욱 빨라진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키로 했다. 고용부는 이 같은 개선안이 오는 상반기 중에 시행될 수 있도록 산재보험법 등의 관련법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검찰, 유해화학물질 관리실태 일제 합동점검

구미 불산누출사고, 상주 염화수소누출사고, 화성 불산누출 사고 등 최근 연이어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하자 검찰이 칼을

빼들었다. 대검찰청 공안부(공안부장 임정혁)는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유해 화학물질 관리·감독실태 등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검찰은 전국 검찰청별로 고용노동청, 환경청, 경찰청, 지자체, 소방방재청 등 관내 유관기관이 모두 참석하는 회의를 신속히 개최하고, 각 지역에 맞는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검찰은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등 피해확산 방지대책을 정비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또 검찰은 고용노동부와 환경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유해 화학물질 관리·감독실태를 정밀 점검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합동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이때 검찰은 철저한 점검과 계도를 실시하되 우선적으로 사업장에 자체시정 기회를 부여해 사업장이 스스로 효율적인 안전사고 예방·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하지만 검찰은 단속 및 점검결과 독성물질 저장·포집·처리 설비를 설치하지 않는 등 위반 정도가 중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격히 형사 책임을 추궁할 방침이다. 더불어 검찰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려내고, 사업주의 중대한 과실이 확인되면 구속 수사를 하는 등 엄정히 대처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공안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 엄중하게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면서 "부실한 안전관리로 국민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사업장에는 그에 걸맞은 처벌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경고했다.

7월부터 타워크레인 벽체 고정 의무화

오는 7월부터 일선 건설현장에서는 타워크레인을 벽체에 고정해 사용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붕괴, 전도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타워크레인 안전기준을 개정, 7월부터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동안 타워크레인 인은 태풍 등 자연재해나 설치·해체·상승 등 작업과정에서의 안전관리 소홀로 인해 붕괴 및 전도사고가 빈번히 발생했다. 개정안은 이런 점을 감안해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

관리를 한층 강화했다.

먼저 개정안은 건축물의 높이가 고층화됨에 따라 과부하나 태풍으로 인한 타워크레인의 붕괴위험이 높아진 점을 반영해 타워크레인 사용 시 벽체에 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했다. 다만 개정안은 벽체에 고정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와이어 고정 방식'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타워크레인 전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도지점에서의 안정도 기준을 한국산업규격(KS)의 타워크레인 안정성 요건을 따르도록 했다.

개정안은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장치도 마련했다. 타워크레인의 보도에 10cm 이상의 발끝막이판을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추락방지를 위해 사다리의 통로를 지그재그로 배치하도록 하는 등 연속된 구조로 설치할 수 없게 했다. 특히 분진이 많은 장소나 기온의 변화가 심한 장소에는 타워크레인 조종실을 설치하고, 운전실은 자연환기나 환기장치를 갖추도록 하여 조종사가 쾌적한 상태에서 타워크레인 운전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타워크레인의 안정성을 대폭 강화한 만큼 건설현장에서의 타워크레인 전도 및 붕괴 사고가 사전에 예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해빙기 대비 주요 건설현장 안전점검 실시

봄철 해빙기를 맞아 국토해양부가 전국의 주요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안전점검에 나선다. 국토해양부는 3월 15일까지 전국 695개 현장을 대상으로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비탈면, 흙막이 등 취약시설에 대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견실한 시공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민간 전문가 118명이 포함된 민관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도로, 철도, 항만, 건축물 등 현장특성을 반영한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들 민관합동 점검반은 대규모 토공사 현장을 중심으로 흙막이 등 가시설물의 안전관리 상황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국토부는 점검결과를 토대로 부실시공을 하거나 안전관리가 소홀한 현장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엄중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반면 시공 및 품질이 우수하고 철저한 안전관리를 펼치고 있는 현장에 대해서는 정부표창 등 인센티브를 적극 수여할 예정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겨울 강추위가 장기간 이어졌기 때문에 올해 해빙기의 경우 예년보다 지반침하, 비탈면 붕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면서 "작은 재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고 세심한 감독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선 현장에서도 사고의 위험이 높은 해빙기를 맞아 근로자들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우수한 품질의 건축물을 시공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더욱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용부, 지게차 운전작업 안전대책 발표

사업장에서 지게차로 화물 운반작업 중 충돌, 협착, 낙하, 추락 등의 재해로 매년 평균 37명의 근로자가 사망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최근 '지게차 운전작업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게차 운전작업 시 가장 큰 위험 요소는 운전자 시야 불량, 무면허 운전 등에 의한 충돌 위험이다. 지게차 통로구간 운행을 준수하는 근로자가 드물고 운전 시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아 충돌 등의 사고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경사면 또는 무게중심이 상승한 상태에서 급선회를 하다가 전도사고가 나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또 화물 과다 및 편하중 적재 등도 안전사고를 부추기고 있었다. 이밖에 포크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고소작업을 실시하다 추락하는 사고도 많았다. 이러한 지게차 위험요소를 감안해 고용부는 ▲지게차 전담관리자 지정 및 키 관리 ▲안전통로 확보 ▲무자격자 운전금지 ▲화물 과다 적재 금지 ▲안전벨트 착용 등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산업현장에서 지게차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관련 법적 이행사항과 권고사항을 숙지해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